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15

발의연월일: 2020. 7. 31.

발 의 자: 안규백·김영배·윤재갑

이원택 · 정청래 · 박영순

양정숙 • 문정복 • 윤건영

김회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,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,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임.

이에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,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 ·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4조의2제1항, 제38조의 2, 제63조제1항, 제87조의2제2항제3호, 제88조의2제2호 및 제90조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제1항 본문 중 "이 조에서 "수술등""을 "이 조, 제38조의2 및 제92조에서 "수술등"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술등의 촬영·녹음에 관한 사항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8조의2(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) 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적정한 의료환경을 유지하고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술실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자(이하 "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"라 한다)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등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·녹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·녹음을 거 부할 수 없다.
 -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촬영·녹음한 자료를

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-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촬영·녹음한 자료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의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·녹음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수술등의 경과를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 하는 경우
- 2. 「환자안전법」 제2조에 따른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
 •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경우
- 3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⑥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·녹음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・운영 및 촬영・녹음 자료에 관하여

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 제63조제1항 중 "제41조부터"를 "제38조의2, 제41조부터"로 한다. 제87조의2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·녹음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 자

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·녹음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한 자

제88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·녹음한 자료를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

제90조 중 "제41조"를 "제38조의2제1항·제2항 전단·제3항·제5항, 제41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706 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5 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의2(의료행위에 관한 설명)	제24조의2(의료행위에 관한 설명)
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	①
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	
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	
려가 있는 수술, 수혈, 전신마	
취(이하 <u>이 조에서 "수술등"</u> 이	<u>이 조, 제38조의2 및 제9</u>
라 한다)를 하는 경우 제2항에	<u>2</u> 조에서 "수술등"
따른 사항을 환자(환자가 의사	
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	
법정대리인을 말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에게 설명하고 서	
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	
이 조에서 같다)으로 그 동의	
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설명 및	
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	<u>.</u>
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	
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	
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	
러하지 아니하다.	
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	2
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	
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③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 6.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술등의 촬영·녹음에 관한 사항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8조의2(수술실 내 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설치・운영) ① 수술 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나 관리자는 적정한 의료환경 을 유지하고 의료분쟁을 예방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술실에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제7 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(이하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한 다)를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 · 운영하는 자(이 하 "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" 라 한다)는 환자 또는 환자 보 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등 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· 녹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료 인,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 · 녹음을 거부할 수 없다.

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촬영·녹음한 자

료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-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촬영·녹음한 자료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 항에 따라 촬영·녹음한 자료 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 다.
- 1.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수 술등의 경과를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2. 「환자안전법」 제2조에 따 른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

제63조(시정 명령 등) ① 보건복 지 지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 항, 제16조제2항,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·제3항, 제23조제2항, 제34조제2항, 제3 5조제2항, 제36조, 제36조의2, 제37조제1항·제2항, 제38조제1 항·제2항, <u>제41조부터</u> 제43조 까지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제

위하여 열람시기 • 절차 및 방
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3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
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
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<u>⑥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·</u>
녹음한 자료는 의료분쟁 조정
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
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
여서는 아니 된다.
운영 및 촬영·녹음 자료에 관
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
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
른다.
 세63조(시정 명령 등) ①
제38조의2, 제41조부
Fi
<u>-1</u>

1항,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,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, 종합 병원·상급종합병원·전문병원 이 각각 제3조의3제1항·제3조의4제1항·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,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·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 제87조의2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7조의2(벌칙) ① (현행과 같
<u>о́</u>)
②
,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
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ㆍ녹
음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
등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

법률 제1706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·2. (생략) <u><신 설></u>

<u>3.·4.</u> (생략)

제8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
<u>한 자</u>
법률 제17069호 의료법
일부개정법률
제87조의2(벌칙) ① (현행과 같
<u>o</u>)
②
<u>.</u>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
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ㆍ녹
음한 자료를 의료분쟁 조정
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
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
<u>한 자</u>
<u>4.·5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
같음)
제88조의2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
2.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

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

<u>2.</u> (생 략)

제90조(벌칙) 제16조제1항ㆍ제2 저 항, 제17조제3항·제4항, 제17 조의2제1항 · 제2항(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), 제18 조제4항, 제21조제1항 후단, 제 21조의2제1항 · 제2항, 제22조제 1항 · 제2항, 제23조제4항, 제26 조, 제27조제2항, 제33조제1항 • 제3항(제82조제3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• 제5항 (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), 제3 5조제1항 본문, 제41조, 제42조 제1항, 제48조제3항 · 제4항, 제 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 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지 아니하여 영상정보처리기
기로 촬영·녹음한 자료를 분
<u>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</u>
훼손당한 자
<u>3.</u> (현행 제2호와 같음)
제90조(벌칙)
제38조의2제1항·제2
항 전단·제3항·제5항, 제41조
<u>.</u>
•